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하천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맞춰 점용료 분할납부 횟수 등 조정(안 제5조제3항)

- 하천수사용료 징수 기준 표기
- 6개월씩 균할납부(연 2회) →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

나. 하천수사용료에 대한 근거 조항 수정(안 제2조제2항, 안 제5조제2항)

5. 검토내용

- 상위법령인 「하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횟수 조정 및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- 상위법령인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은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〈하천법 시행령〉

제42조(점용료등의 징수)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6. 6. 28., 2020. 7. 31.>

- 동 시행령 제57조 또한 하천수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함.

〈하천법 시행령〉

제57조(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) ④ 시·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. 다만,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(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)에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
- 충북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 징수 규정이 6개월 균할납부(1월과 7월)에 납부하도록 정하여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해당 조항은 규제개선 차원의 개정이 필요함.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천·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개정

(체감형 규제혁신Ⅲ) 재검토를 요청함.[옴부즈만지원단, '24.3.8.]

- 현행 제5조는 점용료 등의 징수를 규정함에 있어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,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과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4. 12. 6.~'24. 12. 2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횟수 조정하여 상위법령과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,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